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①책형

<2021 법무사>

【문41】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같음)

- ① 부부의 일방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부부의 동거가 없어 모가 법률상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고 부자관계(父子關係) 다툼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의 소에 의하여 가능하다.
- ② 혼인 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면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형성되므로, 혼인 외 출생자가 자신과 사망한 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 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란에 사망한 부의 성명을 기재하여 달라는 취지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④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을 하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 ⑤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것이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 다면 과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 계부존재확인 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해설

① **判例** 대판 1983.7.12.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 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처가 가출하여 부와 별거한지 약 2년 2개월 후에 자를 출산하였다면 이는 동조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여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기본서 172면 각주 선례)

先例 제201111-1호(혼인 외 출생자가 제척기간의 도과로 사망한 친생부와 인지판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은 후,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근거로 관할 가정법원의 '친생부를 기록하라'는 등록부정정허가결정이 있었다면 인지절차없이 친생부를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이 가능한지(소극))

혼인 외 출생자가 사망한 부의 친생자 신분을 취득하려면 사망한 부가 생전에 혼인 외 출생자를 인지하였거나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인지가 없는 한 비록 혼인 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형성될 수는 없으므로, 혼인 외 출생자가 자신과 사망한 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란에 사망한 부의 성명을 기재하여 달라는 취지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하거나, 나아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원에 기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의 절차에 따른 등록부정정허가결정을 받아 그 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란에 사망한 부의 성명을 기재하여 달라는 취지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하더라도 시(구)·읍·면의 장이 이를 수리할 수는 없다(2011.11. 23. 가족관계등록과-3393 질의회답).

③ **判例** 대판1997.2.25. 96므1663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다른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아무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④ **例規** 제300호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4조(모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

①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⑤ **判例** 대판 1994.5.24. 93므119 전원합의체 판결

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과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적의 기재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정답 : ②

<2021 법무사>

【문42】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하여 발급한다.
- ②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의 성명,

- 성별,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신청인은 사람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
- ③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는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 중에서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배우자 한 사람과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현출하고,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은 현출하지 아니한다. 한편 같은 배우자와 두 번 이상 혼인한 기록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이 선택한 하나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현출한다.
 - ④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는 특정등록사항란 중 혼인 외의 자녀, 전혼 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를 제외하고 작성한다.
 - ⑤ 영문으로 작성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경우 본인의 등록부가 폐쇄되거나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그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해설

- ① 규칙 제21조의2(특정증명서의 작성방법)
- ②
 -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특정증명서로 발급한다.
 - 1. 가족관계증명서
 - 2. 기본증명서
 - 3. 혼인관계증명서
 - ②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 1. 본인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2.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사람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
 - 3. 본인의 등록기준지
 - 4. 본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 전부의 본
 - ③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 1. 본인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2. 다음 각 목 중 신청인이 선택한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
 - 가. 출생, 사망과 실종
 - 나. 인지와 친생자관계 정정
 - 다. 친권과 미성년후견(다만, 현재의 사항만을 선택할 수도 있다)
 - 라. 개명과 성·본 변경
 - 마. 국적의 취득과 상실
 - 바. 성별 등의 정정
 - 3. 본인의 등록기준지
 - 4. 본인의 본
 - ④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 1. 본인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2.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 3. 본인의 등록기준지
 - 4. 본인의 본
 - ⑤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③ **【例規】** 예규 제561호〔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혼인관계증명서)
①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는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 중에서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배우자 한 사람과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현출하고,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은 현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배우자와 두 번 이상 혼인한 기록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이 선택한 하나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현출한다.
③ 혼인의 해소에 관한 기록이 누락된 경우, 혼인 기록과 이혼 기록의 배우자 성명이 서로 다르게 착오 기재된 경우 등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 ④ **【例規】** 제498호〔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가족관계증명서 중 제외사항)
가족관계증명서(일반)는 다음의 기록사항을 제외하고 작성한다.
1. 특정등록사항란의 혼인 외의 자녀 또는 전혼 중의 자녀
2. 특정등록사항란의 사망한 자녀
- ⑤ **【例規】** 제541호〔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발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1.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본인이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
3. 본인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4. 부, 모 또는 배우자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다만, 사망(실종신고 및 부재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국적을 상실(이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등록부에 부, 모 또는 배우자가 2명 이상 기록된 경우
6.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7.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정답 : ①

〈2021 법무사〉

【문43】 개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인과의 신분행위(예: 외국인에게 입양된 경우 등) 등으로 그 외국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형성이 되어 그 외국의 법에 따라 개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 외국에서 개명할 이름을 개명신고에 의해서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다.
- ② 개명허가신청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달리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 시절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개명신청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③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재외국민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인지를 붙이거나 그 액면상당의 현화화를 재외공관장에게 납부하여도 된다.

- ⑤ 개명신청을 허가한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법정기간 내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없으면 지체없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해설

- ① **예規** 제307호〔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 제10조(재외공관예의 인지납부)
- ① 재외국민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인지를 붙이거나 그 액면상당의 현지화를 재외공관장에게 납부하여도 된다.
- 제11조(외국에서 한 개명의 효력)
- ① 외국인과의 신분행위(예: 외국인에게 입양된 경우 등)등으로 그 외국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형성되어 그 외국의 법에 따라 개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 외국에서 개명한 이름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다. (☞ :: 외국법원의 판결(결정)에 의한 개명은 할 수 없다.)
- ② **判例** 대결 2009.8.13.2009스65
- [2] 신청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달리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 시절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개명신청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③ **법** 제99조(개명신고)
-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사람이거나)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규칙** 제87조(허가사건의 처리절차)
- ④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허가 신청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할 수 있다.
- ⑤ (기본서 304면)
- 예規** 제504호〔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
- 제2조(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통지의 방법)
- ① 규칙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규칙 제87조의2 제1항 제1호의 확인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 제3조(신고의 최고 및 기록)
- ① 전 조의 통지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법정기간 내에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없으면 지체없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신고할 것을 최고한다.

정답 : ⑤

【문44】 외국인 기록대상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인인 배우자의 특정등록사항은 국민인 상대방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하며, 외국인인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은 국민이 인지, 입양, 친양자입양한 자녀인 경우에만 기록한다.
- ②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귀화통보를 하는 경우, 그 인명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귀화통보서에 한글과 한자로 표기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귀화통보서에 표기한 원지음대로 한글과 한자로 기록하여야 한다.
- ③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기재된 국호와 지명에 대한 해당 외국 원지음의 한글표기가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를 부전지에 적어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붙이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추어 기록하여야 한다.
- ④ 한국인 부가 외국인인 자녀를 인지하는 경우 종전 성(姓) 계속 사용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없는 한, 인지의 효력으로 외국인 자녀의 성은 한국인 부의 성분으로 변경된다.
- ⑤ 국제가족관계등록사건에서 외국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각 기재된 당사자의 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신고인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또는 외국 관공서가 발행한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고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류만으로 동일인임이 명백하거나 사소한 착오나 유류가 있는 것에 불과한 때에는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 없이 신고서류를 수리할 수 있다.

해설

① (기본서 137면)

【例規】 제397호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제3조 (외국인인 배우자) 외국인인 배우자의 특정등록사항은 국민인 상대방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한다.
 제4조 (외국인인 자녀) 외국인인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은 국민이 인지, 입양, 친양자입양한 자녀인 경우에만 기록한다.

② (기본서 278면)

③ **【例規】** 제451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귀화통보의 경우)
 ①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하 “귀화자”라 한다)에 대하여 귀화통보를 하는 경우, 그 인명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을 귀화통보서에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귀화통보서에 한글로 표기한 원지음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귀화자가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인 경우에, 그 귀화자의 인명에 대하여는 제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외국의 국호와 지명의 정정)
 외국의 국호와 지명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한글표기를 기재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은 규칙 제60조를 준용하여 간이 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④ **例規** 제518호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8조(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①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인지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별지2양식의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종전 성과 본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⑤ **先例** 제201110-1호 [국제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를 수리하는데 있어서 외국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각 기재된 당사자의 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국제가족관계등록사건에서 외국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각 기재된 당사자의 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신고인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또는 외국 관공서가 발행한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고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류만으로 동일인임이 명백하거나(예: 미국 시민권증서 뒷면에 'name change' 확인내용이 기재되는 경우, 혼인으로 성이 변경된 때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의하여 배우자의 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 사소한 착오나 유류가 있는 것에 불과한 때에는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 없이 신고서류를 수리할 수 있다.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의 예로는 우리나라 재외공관이 발행하는 동일인증명서, 한국주재 캐나다 재외공관이 발행하는 범정확인서(또는 캐나다 통계국이 발행하는 성명변경증명서), 한국주재 미국 재외공관이 공증한 사건본인의 선서서 등이 있다. (2011. 10. 25. 가족관계등록과-3061 질의회답)

정답 : ②

<2021 법무사>

【문45】 혼인신고 및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혼인신고인이 생존 중에 혼인신고서를 우송하였으나 그 혼인신고인 일방이 사망한 후에 혼인신고서가 도착한 경우라도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② 혼인신고서와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접수일이 같고, 그 선후의 판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혼인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
- ③ 한국에서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은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을 때에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 ④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제출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취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취급 상대방은 특정된 1인이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수리불가신고서는 제출할 수 없다.

해설

- ① **법 제41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①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② ⑤ **【例規】** 제519호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이하 “수리불가신고서” 라 한다]를 신고인 본인이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읍·면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제출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㉔ 대리인x, 우편 또는 사자(使者) 제출x)
 2. 혼인수리불가신고인은 6개월 이내의 범위(접수일부터 기산)에서 혼인신고수리불가 취급을 요하는 기간을 정하여 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5. 혼인신고수리불가 취급 상대방은 특정된 1명 이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수리불가 신고서는 제출할 수 없다.
 8. 동일당사자에 대하여 수리불가신고서와 혼인신고수리불가기간내에 혼인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처리한다.
 - 다. 혼인신고서와 수리불가신고서의 접수일이 같은 경우
 - 접수 선·후를 비교하여 위 “가”, “나”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그 선·후의 판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수리불가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

- ③ **【例規】** 제452호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한 경우의 혼인신고 및 이에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나. 혼인신고의 절차 및 기록방법
 - (1)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 외국인인 처의 위 1.가.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이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을 때에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 ④ **【例規】** 제417호 [미성년자 등의 혼인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동意的 필요한 혼인
 - 가. 만 18세에 이른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나.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정답 : ②

<2021 법무사>

【문46】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적취득자의 성분창설허가, 개명허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및 등록기록정정허가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므로 심문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직권에 의한 탐지와 증거조사가 인정된다.
- ②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결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수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후에는 그 허가결정을 한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는 없다.
- ③ 비송사건절차법이 민사소송법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에는 비송

사건절차법이 준용되므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신청은 적법하다.

- ④ 일반 민사비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 청구인적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 ⑤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신청서나 재판서에는 당사자에 준하여 사건본인을 기재할 필요가 있으므로 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

- ①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규칙 §87). 따라서 심문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직권에 의한 탐지와 증거조사가 인정된다(「비송사건절차법」 §11, §13).

② **例規** 제422호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7.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결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후 동 허가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

(㉠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19①). 그러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결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수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후에는 그 허가결정을 한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는 없다.

③ **判例** 대결 2009.9.10. 2009스89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제10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신청은 부적법하다.

- ④ 일반 민사비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과 달리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없으므로 당사자만이 신청인이 될 수 있다.
- ⑤ 비송사건의 신청서기재사항(「비송사건절차법」 §9)에는 신청인 이외에 사건본인의 기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신청서나 재판서에는 당사자에 준하여 사건본인을 기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규칙 §87③). 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87③).

정답 : ③

〈2021 법무사〉

【문4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적상실의 신고는 본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게을리한 때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② 甲이 乙의 자료 출생신고되었다가 甲·乙간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甲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됨으로 인하여 甲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가 다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산점인 출생신고기간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③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6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한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구)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인 재외국민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해설

① 법 제97조(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 ①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신고의무자 ⇒ 신고해태 ⇒ 과태료 제재○)
- ④ 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 신고적격자⇒ 신고해태 ⇒ 과태료 제재×)

② (기본서 369면)

先例 제2-470호 (확정된 경우의 출생신고기간의 기산)

갑이 을의 자로 출생신고되었다가 갑-을간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갑의 호적이 말소됨으로 인하여 갑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가 다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출생신고기간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할 것이 아니고 출생시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01.11.5. 법정 제1621호)

③ 법 제124조 (과태료 부과·징수)

- ④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법 제124조 (과태료 부과·징수)

- ① 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읍·면의 장(제2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정답 : ④

〈2021 법무사〉

【문48】 특종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父)의 추정이 경합하여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부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사건본인에 대하여, 이후 그 판결 확정 전 국적상실을 이유로 한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

상실통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의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과 관련된 어떠한 기록도 할 수 없으며, 그 신고서류 또는 통보서류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해야 한다.

- ③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혼인, 입양, 인지신고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 신고서류의 원본을 감독법원에 송부하고, 그 등본을 별도로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지 아니한다.
- ④ 인지된 태아의 사산신고가 제출되는 경우 그 신고서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고,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도 접수에 관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 ⑤ 외국인 부모가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외국인 부모는 그 외국인 자녀에 대하여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그 출생신고서류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해설

- ① **【例規】** 제412호〔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0조(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㉞ 父 '未定'의 출생신고)
부(父) 미정(未定)의 출생신고란, 부(父)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부(父)의 추정이 경합된 경우이므로, 여자가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100일 내에 재혼하였고, 재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전혼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자녀가 출생하여, i) 부(父) 미정의 출생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부(父)가 확정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신고로 보아 이를 ii)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iii) 부(父)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iv)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父) 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라 v)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先例】** 제201602-2호〔등록부상 부 갑남 및 모 을녀(출생신고인 :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판결확정일 : 2014. 7. 5.)되어 사건본인 병남(그 배우자 및 자녀 없음)의 등록부가 폐쇄된 후, 법무부장관이 병남에 대한 국적상실통보(국적상실일 : 2003. 10. 23., 국적상실통보일 : 2015. 7. 7.)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방법〕
1.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사건본인의 등록부를 폐쇄하고 그의 제적을 말소하게 되는데, 이후 그 판결 확정 전 국적상실을 이유로 한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 병남의 등록부는 처음부터 위법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사건본인 병남의 폐쇄등록부(제적부)에 국적상실과 관련된 어떠한 기록(기재)도 할 수 없다.
2. 한편, 이때의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는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신고서류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로 보아 시(구)·읍·면의 장이 접수순서에 따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해야 할 것이다. (2016. 2. 19. 가족관계등록과-627 질의회답)
- ③ **【例規】** 제303호〔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의 처리절차 예규〕
제2조(신고서류의 관리)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혼인, 입양, 인지신고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 신고서류의 원본을 감독법원에 송부하고, 그 등본을 별도로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지 아니한다. / 다만, 외국인 사이의 신고서류 원본은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보존한다.

④ (기본서 16, 17면)

【例規】 제125호 [인지신고된 태아가 사산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㉔ 태아인지신고도 마찬가지)

인지신고를 한 태아의 사산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출생신고 의무자로부터 사산신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이 사산신고를 수리할지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규칙 제69조(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

③ 태아인지신고(i), 이혼의사 철회신고(ii),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iii) 및 혼인신고를 하는 때에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한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iv)에는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도 접수에 관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㉔ 인지된 태아의 사산신고x)

⑤ 외국인 부모가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외국인 부모는 그 외국인 자녀에 대하여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그 신고서류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게 된다.

정답 : ④

<2021 법무사>

【문49】 친권 및 친권자 지정·변경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고,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 ②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미성년자를 인지한 때 하는 친권자 지정신고의 경우에는 인지신고 또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 ④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에게 포태 중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그 자에 대한 친권자지정 신고를 협의이혼신고시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 ⑤ 이혼 후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현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① 「민법」 제909조(친권자)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② 민법 제915조(징계권) <본조 삭제 2021.1.26, 시행 2021.1.26.>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例規】** 제374호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5조(인지신고와 친권자 지정신고)

① 제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지신고 또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② 제3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④ **【例規】** 제551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
제23조(협의이혼신고의 수리)
- ③ 이혼하는 부부에게 미성년인 자녀(포태 중인 자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시(구)·읍·면의 장은 이 경우 이혼신고서와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포태 중인 자에 대한 친권자지정 신고는 이혼신고 시 수리하지 않고, 포태 중인 자의 출생신고 시 수리한다. 이 경우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포태 중인 자의 친권자지정 신고기간은 출생 시부터 기산한다.
- ⑤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대판 2012.4.13. 2011므4719).

정답 : ③

<2021 법무사>

【문50】 국적의 취득 및 상실,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가 혼인 외의 자인 경우 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다.
- ②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신청 없이도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 ④ 법무부장관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 ⑤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해설

- ① **【例規】** 제429호〔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아래 예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
- 가. **혼인중의 자인 경우**
 부(父)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를 포함한다)의 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 나. **혼인외의 자인 경우**
 부(父)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父)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성년인 경우), 국적취득 또는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후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출생사유를 기록한다. 다만, 태아인지 신고된 피인지는 그 부(父)의 출생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 ② **법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국적법」 제8조(수반 취득)**
 ①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외국인의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수반취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부모가 한국국적을 취득할 때에 당연히 함께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법 제93조 (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3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 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 ⑤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 ③